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편의점 과다 출점 및 과열 경쟁을 억제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며, 자치구 규칙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오탈자를 수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규정 변경(안 제3조)

○ 제1항 -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에서 ‘100미터’로 변경(일반소매인)

나. 담배 구내 소매인의 영업소 거리 예외 규정 일부 변경(안 제3조제3항)

○ 제3항 - 제3조제2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 소매인 간의 거리를 ‘25미터’에서 ‘100미터’로 변경 [구내(일반)소매인]

다. 매장면적 측정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조제5항제3호)

○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매장면적에 산입한다.

라. 일반 소매인과 구내 소매인 지정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조제6항)

-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마. 담배판매업 부적당한 장소 추가(안 제5조제2호)

- 기존 게임장 · 문구점 · 만화방 → PC방 추가

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1) 제3조제1항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을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4항” 으로 변경

2) 제3조제2항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을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으로 변경

사. 오탈자 정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아. 시행일: 공포일로부터 **30일 이후 시행**(안 부칙 제1조)

1) 일정 기간 경과기간을 두어 기존 소매인과 신규 신청자가 개정된 규칙에 대비도록 함

자. 종전 규정 **기간제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5년간 적용유예**

1) 폐업 신고 후 신규지정 접수 공고 시

(폐업 신고 된 영업소와의 거리가 50미터 이하인 경우)

2)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100미터 거리제한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도심산업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4층 (예관동), 문의전화: 02-3396-5594, FAX: 02-3396-8693, 메일: puhis8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